

1. (사업 개요)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,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매출액 등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(산업통상자원부)하고, 정책자금 융자 및 경쟁력강화 컨설팅 지원

2 (지원 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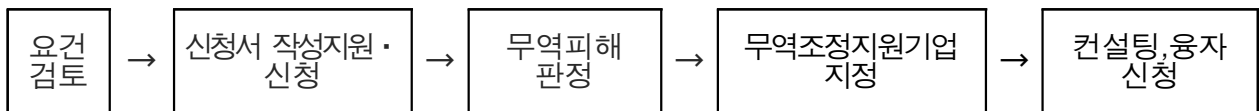
용자 지원	컨설팅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무역피해극복 계획이행에 필요한 시설·운전자금 - 대출금리 : 연 2.0% 고정금리 - 대출기간 : 시설 10년 이내, 운전 6년 이내 - 대출한도 : 60억원(운전 5억원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무역피해극복 계획이행에 필요한 경영·기술분야 - 지원금액 : 총소요비용의 80% - 수행기간 : 최대 6개월 - 지원한도 : 120백만원

3. (신청 및 지원 절차)

○ 신청자격 :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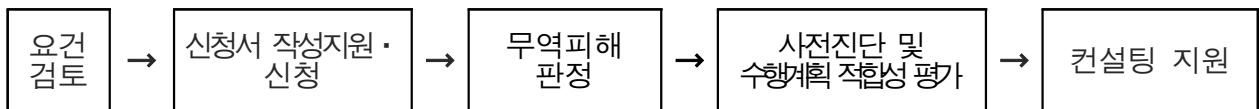
① 무역조정 용자·컨설팅 :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%이상 감소한 기업

※ 최근 2년내의 6개월이상 피해기간, 무역조정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가능



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 컨설팅 :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%이상 감소한 기업

※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 지원



4.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
담당 최성희, 고유정 (전화 055-751-9622, 9626/ shchoi@sbc.or.kr)